



제 420 회 국 회 (임 시 회)
제 2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스포츠윤리센터의 대한체육회 등 임원 징계 심의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43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배제	3
2. 스포츠윤리센터의 대한체육회 등 임원 징계 심의 등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1. 14.
3. 회 부 일: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부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협회 운영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와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로 한정하고 있어, 체육단체의 부적정한 운영에 대해서는 징계요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명확히 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제44조).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회장 포함)의

징계나 연임심의를 해당 단체 또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18조의9, 제33조, 제34조 등).

Ⅲ. 검토의견

1. 시정명령 미이행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배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체육단체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 제4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u>인권침해에 대하여</u>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② ----- ----- <u>인권침해 또는</u> <u>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u> <u>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u> <u>사실에 대하여 해당</u> ----- --. ----- ----- -----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생략)

제44조(보고·검사 등) ①·②

(생략)

<신설>

<신설>

-----.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44조(보고·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
하거나 배제하도록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u><신 설></u>	<u>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u>
<u><신 설></u>	<u>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의견

- 현행법은 문체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관 및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에 업무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징계요구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고·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징계요구 가능한 범위를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에까지 확대하고,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본 개정안은 2024. 12. 31.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6955)에 그 취지 및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바 개정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¹⁾.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6955)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u>인권침해에 대하여</u>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u>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u>.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u>그 결과를</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징계 요구를 받은</u>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u>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u>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u>-----<u>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u>----- -----<u>조치요구를</u>----- ----- ----<u>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u>----- ----- -----<u>조치요구</u>-----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u>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u>.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u>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④ ----- -----<u>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u>
---	---

○ 한편, 안 제44조제3항과 관련하여,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 관련 내용은 이미 개정되었으나, 법체계상 지방체육회에 대한 감독은 그 설립을 인가한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²⁾, 개정안과 같이 지자체장에게도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에 따른-----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감독)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2. 스포츠윤리센터의 대한체육회 등 임원 징계 심의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처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3항제6호의2 신설, 제18조의9제4항 신설).
- 개정안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제6호의3 신설, 제33조제9항 신설, 제34조제10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6의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6의3.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제한

7. (생 략)

④ ~ ⑧ (생 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예외 심의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
체육회 임원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심의한다.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⑧ (생략) <u><신 설></u>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체육회 및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u>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⑨ (생략) <u><신 설></u>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u>

다. 검토의견

- 현행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규정에 따라 임원의 징계 또는 연임 심의를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및 연임 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1)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는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는 해당 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함.³⁾
-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징계 심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를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절차·내용적 합리성·공정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⁴⁾.

3) [참고 1. 단체별 징계 심의 관련 규정]

4) 국민권익위에서도 ‘민간 종목 가맹단체의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인권침해, 스포츠비리)를 해당 민간 종목 가맹단체의 직속 상급단체에서 관할하도록 규정’ 하는 등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23. 12. 18. 의결,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 다만, 체육계의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심의까지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는 체육계 이해관계자나 일반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⁵⁾.

5)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철저히 조사와 징계 권고에만 집중하고, 실제 징계 결정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나 해당 소속 기관이 담당해야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의견임.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육상연맹 등 일부 가맹 경기단체도 유사한 의견임.

2)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 현행 각 단체의 정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음⁶⁾.
 - 대한체육회 임원의 경우, 임기는 4년이고(감사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함.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경우, 임기는 4년이고(감사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며(회계감사는 연임 제한 없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함.
 -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경우, 임기는 4년이고(감사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며, 연임 관련 예외는 없음.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경우, 임기는 4년이고(감사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며(회계감사는 연임횟수 제한 없음),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추가 연임이 가능함.
- 개정안의 법률조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됨.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경우 임기는 4년이고, 1회

6) [참고 2. 단체별 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규정]

연임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임 관련 예외는 없어짐.

- 경기단체 임원의 경우 임기는 4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함.

- 개정안은 개별 체육단체 정관에 있는 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외부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조직사유화 문제에 대응하여 개정안처럼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여부를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반면,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외부 조사기관에서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유지 의견임.
- 참고로, 유사한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05711,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연임 심의 등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현황]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신설	김승수 의원안 (2205543)	정연욱 의원안 (2205711)
징계 심의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u>경기단체</u> 임원의 <u>징계 심의</u>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u>징계 심의</u> ○ 경기단체 임원의 <u>징계 재심의</u>
체육단체 임원 연임 심의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4년 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다만,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 가능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단체별 징계 심의 관련 규정]

대상	관련 규정
대한체육회 및 가맹단체 임원 징계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u>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u> 3. <u>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u>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개정 2022. 1. 24.> 1.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2.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징계 중인 자를 포함한다)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가. 체육회 및 관계단체의 임원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u>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u>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u>종목위원회 또는 시·도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u>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 임원 징계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체육회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관 분야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위원회로서 <u>법제상벌위원회</u>, 전국 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둔다. 이외에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생략)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대상	관련 규정
	4.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회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19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u>가맹단체와 시·도지회</u>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u>상벌위원회를 설치</u>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징계기관 분류) ① 장애인체육회는 <u>중앙 가맹단체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u> 및 <u>시·도지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u>에 대한 <u>이의신청 기관</u>이다. 제28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혐의자는 <u>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u>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u>재심사 요구를 받은 당해단체 위원회</u>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4조, 제25조,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① <u>당해단체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u>에는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2. 단체별 임원 임기 및 연임 관련 규정]

대상	관련 규정
대한체육회 임원	「대한체육회 정관」 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감사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18. 4. 2., 2021. 7. 5.>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3.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사무총장 5. 선수대표 1명 6.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포함한 이사 50명 이하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임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8조(임원) ① 회원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20. 7. 29.>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개정 2018. 4. 25., 2019. 12. 20.>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상	관련 규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체육회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 24.>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체의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따라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4.> ③ 위원회는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를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0조(임원) ① 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7.> 1. 회장 1인 2. 8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33인 이내의 이사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연직이사 중 IPC집행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 담당국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정관」 제10조 (임원) ① 가맹단체는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개정 '21.7.30.>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1.7.30.>

대상	관련 규정
	1. 회장 1인 2. 부회장 8인 이하 <개정‘21.7.30.,’23.5.30.> 3. <삭제 ‘21.7.30.> 4.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단체의 임원은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 임원 임기의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가맹단체 임원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될 때 당해 임기의 연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기여가 명확한 경우